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2. 17.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12.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2회 국회(임시회)

－ 제2차 정무위원회 (2025. 2. 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30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2025. 12.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 제1차 정무위원회 (2025. 12. 1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성원의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 기 도)

☐ 현행법상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6개월 동안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있음.¹⁾

○ 동 제도의 취지는 기업체의 자발적인 결정에 따라 제대군인 적극 채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 다만, 현행법령상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긍정적인 유인책이 부재한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²⁾

□ ‘인증(certification)’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증명으로, 사전에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마련해 놓고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인 인증기관이 적합여부를 심사·평가하는 것임.³⁾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은 ‘안전성 확인 또는 국가·국제표준 등

1) 현 인증기업 수 : 95개(신규 인증 57, 재인증 38)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증업체	14(-)	16(-)	23(10)	25(11)	25(16)	23(15)	28(15)	32(14)	43(24)	20(-)

* () 재인증기업 수 ** ‘21년 이전 인증 유효기간 2년, ‘22년 이후 인증 유효기간 3년

2) 의안번호 제2202048호, 정부 제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관계부처 합동,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자료, 2024.2.

기술기준 마련'의 목적이 아닌 제대군인 적극 채용을 유도하는 특정 정책추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증'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

- '지정'은 실정법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용어이나, 그 용례가 매우 다양·복잡하여 지정의 의의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일관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움.

'지정'이 활용되고 있는 현행법상 유형은 ① 허가·인가·특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② 행정업무를 대행·위탁하는 등 행정업무 부여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③ 지원·육성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있음. 그 밖에 규제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특정 지역·지구에 대하여 공용필요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등이 있음.⁴⁾

- 개정안의 '지정'은 '③ 지원·육성대상 선정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지정'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실질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입법 조치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은 별도의 부칙을 두고 있지 않아 이미 '고용 우수

4)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349

기업등의 인증'을 받고 이미 그 인증 표지판을 붙이고 있는 기업 등의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여 잔여 유효기간⁵⁾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변경된 '지정'으로 용어가 대체되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고,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의 경우 '인증'과 '지정' 중 어느 것을 할 것인지 등도 모호한바, 신법·구법 사이의 적용관계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정부가 제출한 다수의 '인증제도의 지정제도로의 전환 관련 개정안'은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 정부는 2024년 2월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지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정인증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국가보훈부 또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⁶⁾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⑤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6)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2025년 정부입법계획에도 반영하여「제대군인지원법」개정을 추진 중임.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민국위원)

- 수정하여 의결함.

6. 수정안의 요지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17일 정무위원장

나.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고용 우수기업등의 인증’을 받고 이미 그 인증 표지판을 붙이고 있는 기업 등의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여 잔여 유효기간 동안 변경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의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수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7. 찬반토론 요지

없 음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없 음

10.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정무위원장

수정 이유 및 주요내용

이미 ‘고용 우수기업등의 인증’을 받고 이미 그 인증 표지판을 붙이고 있는 기업 등의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하여 잔여 유효기간 동안 변경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정에 따라 이미 인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의 경우 개정법률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수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고용우수기업등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제3항·제7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16조의2제1항·제3항·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신청,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 설></u>	<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 -----. <u>제2조(고용우수기업등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u>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제3항·제7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16조의2제1항·제3항·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신청,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지정서

	<u>의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 다.</u>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등의 인증”을 “기업등의 지정”으로,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을 “지정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을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을 각각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를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우수기업등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중

전의 제16조의2제1항·제3항·제7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16조의2제1항·제3항·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신청,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또는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 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① ----- ----- ----- ----- ----- ----- ----- ----- ----- ----- <u>기업등의 지정</u> ----- <u>고용우수 기업등지정</u> ----- -----.
② 기업등은 <u>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u>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u>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u> ----- -----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용우수 기업등인증의</u> 표시를 하거나	③ ----- ----- ----- ----- ----- ----- <u>고용우수 기업등지정의</u> -----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1. -----

-----지정을-----

2. -----지정

⑤ -----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

⑥ -----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

⑦ -----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